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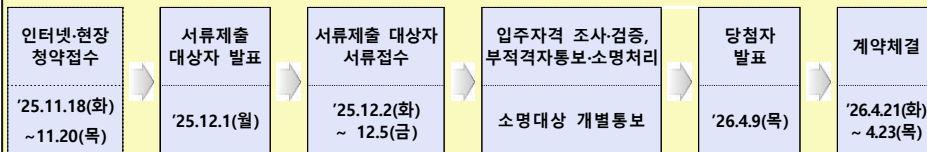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 모집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5. 11. 06.(목))

1. 건설위치 :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아동 일원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 A3블록 538호 중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179호

- 입주자 모집 공고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신청자 개별사항 등에 대한 의사소통 오류로 관련사항 착오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신청과 관련한 상담은 주택신청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신청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신청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9.09.27일 이후 입주자 모집부터 동일유형 공공임대주택의 예비입주자로 중복선정(중전 선정지위 자동탈락)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통합공공임대, 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오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및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35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5.11.06.(목)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06)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 신청자격별 세부 무주택소득자산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2018.11.07. 이후 출생)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이하 자녀(2018.11.07. 이후 출생)를 둔 한부모인 사람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다만, 65세이상의 고령자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분에 한하여 현장접수를 도와드립니다.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가입이 완료되어야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공고일 포함) 중전 통장(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경우, 순위확인서 발급 불가하여 청약신청 불가 또는 심사 탈락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 상기 공급일정은 추후 변동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공급 형태	타입	세대 당 계약면적(m²)					구조 및 난방	최대 거주 기간 (년)	입주 예정
		주거 전용	주거 공용	그 밖의공용면적		합계			
				기타공용	주차장				
55 일반	55A	55.4800	23.0741	10.4890	42.8602	131.9033	철근 콘크리트 벽식 구조 / 지역 난방	10~14	'26.12 (예정)
	55B	55.6800	23.6072	10.5269	43.0147	132.8288			
	55C	55.9000	23.3966	10.5685	43.1847	133.0498			
55 주거 약자	55D	55.9000	23.3966	10.5685	43.1847	133.0498			

공급 형태	공급호수		임대조건				전환 가능 보증금 한도액 (원)	최대전환시 임대조건		공급 대상
			임대보증금(원)			월 임대료 (원)		임대 보증금 (원)	월 임대료 (원)	
	우선 공급 (89)	일반 공급 (90)	계	계약금 (계약시)	잔금 (입주시)					
55 일반	82	82	100,400,000	5,020,000	95,380,000	476,900	(+) 49,000,000	149,400,000	191,060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83,000,000	17,400,000	718,980	
55 주거 약자	7	8	100,400,000	5,020,000	95,380,000	476,900	(+) 49,000,000	149,400,000	191,060	
							(-) 83,000,000	17,400,000	718,980	

- 인천계양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은 공공분양(359호)과 혼합된 임대주택입니다.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추첨을 실시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일은 2026년 12월이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금회 공급은 세대면적·주택평면에 따른 구분없이 55형 단일 주택형별로 청약접수 받으며, 신청자격에 따라 '55일반' 또는 '55주거약자' 로만 선택이 가능하고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합니다.
- 공급형태 물량의 4배수 이상을 입주자격 검증 대상자(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할 예정이며, 입주자격 검증 결과 적격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예비입주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 예비입주자는 실제 입주까지의 기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음)
- 우선공급이 미달된 경우 남은 우선공급물량은 해당 공급대상자의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3층이하 저층세대 중 일부에 배정되어 있으며,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이면서 주거약자 요건을 갖춘 자만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인천계양 A3블록 행복주택에는 디지털도어락, 가스쿡탑(3구), 음식물탈수기, 싱크용절수기, 욕조(공용욕실), 비데, 세대환기시스템, 실별온도조절기가 설치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연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연이율 3.5%를 적용한 것으로, 향후 전환이율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전환보증금 제도는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써 신청하는 시기는 **계약체결 이후로, 입주시작 약 1개월 전에 LH에서 보내드리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은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전환보증금 제도를 신청 예정인 분들은 계약체결 시점에는 기본 임대조건 상의 계약금을 납입하셔야 합니다.)
- 위 임대조건인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매년 4월 1일을 기준으로 표준임대조건이 갱신**되므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갱신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가족으로서 미성년 자녀가(내국인)인 세대주로 외국인 부모가 대리 신청하는 경우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등 *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세대구성원	비고
• 신청자	
•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 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 신청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신청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단,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국내거소 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직계존·비속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태아	세대구성원에 포함되나 자격검증 예외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의 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공급신청자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1세대 1주택**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예비)신혼부부가 각각 신청하는 경우 부적격]**

- 미성년자녀수는 신청자 혹은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을 인정하며, 재혼 배우자의 이전 혼인 미성년자녀의 경우에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미성년자녀만 인정합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 출산자녀는 '23.3.28 이후 출산한 자녀(임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공급계층 재택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8.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민,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중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06.)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신혼부부는 ①-㉔와 ②~⑥를, 예비신혼부부는 ①-㉔와 ③~⑥를, 한부모가족은 ①-㉔와 ③~⑥를 모두 갖춘 자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여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됨)

- ①-㉔ (신혼부부) 혼인중인 자
 ①-㉔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①-㉔ (한부모가족)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자(태아포함)
 ②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일 것 또는 6세 이하 자녀(태아포함)를 둔 자
 ③ 해당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 이하(맞벌이 부부 120퍼센트 이하)일 것
 ※ 단, 가구원 수가 2인인 경우에는 110퍼센트,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130퍼센트 이하일 것

가구원수	일반 신혼부부		맞벌이 신혼부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월평균소득금액	기준
2인	6,024,703원 이하	110%	7,120,104원 이하	130%
3인	7,626,973원 이하	100%	9,152,368원 이하	120%
4인	8,578,088원 이하	100%	10,293,706원 이하	120%
5인	9,031,048원 이하	100%	10,837,258원 이하	120%
6인	9,733,086원 이하	100%	11,679,703원 이하	120%

-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④ 해당 세대(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가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가액 합산기준 33,700만원 이하이고, 총 자산 중 자동차가액이 4,563만원 이하 일 것
 ⑤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가입사실을 증명할 수 있을 것 (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⑥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출생자녀 수에 따른 가산 소득·자산 기준 》

* 가산 적용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구분	가산항목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맞벌이 여부	가구원 수	출생자녀 수 (태아포함)	적용 소득기준	자산기준	
					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한부모가족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20%	371,000,000원	50,200,000원
		3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X	2인	0인	110%	337,000,000원	45,630,000원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3인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4인 이상	0인	10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1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20%	405,000,000원	54,760,000원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	2인	0인	130%	337,000,000원	45,630,000원
		3인	0인	12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50,200,000원
		4인 이상	0인	120%	337,000,000원	45,630,000원
			1인	130%	371,000,000원	50,200,000원
			2인 이상	140%	405,000,000원	54,760,000원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가산적용 상세 소득기준

가구원 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110%	120%	130%	140%
2인	-	6,024,703원 이하	6,572,404원 이하	7,120,104원 이하	7,667,804원 이하
3인	7,626,973원 이하	8,389,670원 이하	9,152,368원 이하	9,915,065원 이하	10,677,762원 이하
4인	8,578,088원 이하	9,435,897원 이하	10,293,706원 이하	11,151,514원 이하	12,009,323원 이하
5인	9,031,048원 이하	9,934,153원 이하	10,837,258원 이하	11,740,362원 이하	12,643,467원 이하
6인	9,733,086원 이하	10,706,395원 이하	11,679,703원 이하	12,653,012원 이하	13,626,320원 이하

* 7인이상의 가구는 6인가구 기준소득금액에 추가 1인당 평균금액 702,038원을 합산하여 산정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의 해당 세대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적용 대상	비고
• 신청자 본인 • 신청자 배우자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도 포함
• 신청자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 신청자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 • 신청자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

- ※ "예비신혼부부"의 세대구성원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을 말함("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을 것)을 말함
 ※ 한부모가족은 부 또는 모와 자녀가 동일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경우를 말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 전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와 입주자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은 해지 처리됨.
 ※ 맞벌이부부 여부 판단기준이 되는 '소득'은 「소득세법」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및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을 말하며,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통해 소득이 있는 여부를 판단함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저축 미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중 1인)의 경우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시 당첨 취소 및 임대차계약이 해지 처리됨(단, 한부모가족은 본인만 해당)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06.) 현재 일반 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배점

항목	3점	1점
① 거주지 및 거주기간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3년 이상 거주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3년 미만 거주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 저축 포함) 납입횟수	가입 2년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가입 6개월이 경과한 자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23회이하 납입한 자

※ 신청 시 청약저축 은행명 착오기입으로 인해 납입 인정회차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에는 점수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가입한 은행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저축 납입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가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의 회차 기준이며, 아래 조회방법에 따라 미리 납입 회차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인 터 넷 직접 발급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접속(www.applyhome.co.kr) → 화면 중앙의 '청약통장순위확인서' 발급 → 순위확인서 발급하기 → [일반공급용] 선택 → 동의하기 →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발급신청 후 내역 확인 * (주택명) 인천계양 A3블록 신희희망타운 행복주택 (주택관리번호) 2025000562
은행 방문	청약통장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신청 → 발급내역 확인

※ 거주지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주민등록표상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함

※ 특별시, 광역시 우선공급 2순위 배점항목은 (②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횟수)만 적용함

■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자 → 순위 →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첨
일반공급	순위 → 추첨

3-2.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주거약자용)

※ 주거약자 아닌 자가 주거약자용을 신청할 경우 탈락처리 됨

■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06.) 현재, 3-1. 신혼부부·한부모가족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주거약자에 해당하는 사람

※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하여 신청함.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신청 시 중복신청으로 부적격처리됨)

"주거약자" 란?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⑤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인천광역시 또는 연접지역(서울특별시, 경기도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가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도권 지역(경기도 중 부천시, 시흥시, 김포시 이외 지역)을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로 하는 자
3순위	제1,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소득 근거지'란 사업자등록증(법인등기부등본 등)으로 확인하며 단, 실제 근무지가 사업자등록증의 소재지와 다른 경우 신청인이 해당 증빙서류(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등)를 추가 제출할 경우에 인정함

•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부양가족의 범위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 ① 공급신청자를 제외한 세대구성원 전원
- ②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③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④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전혼자녀 포함)
- ⑤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공급신청자의 형제·자매
- ⑥ 혼인신고를 완료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외국인 배우자
* 형제·자매는 「민법」상 미성년자 또는 만60세 이상인 자에 한합니다.
* 태아는 이미 태어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거약자용 우선공급대상자

입주자모집공고일(2025.11.06.) 현재 주거약자용 일반공급대상자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아래 1순위 또는 2순위의 요건을 갖춘 자

※ 우선공급에서 탈락한 자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일반 공급신청자로 전환됨

(단, 우선공급자격 미충족시 부적격 처리되어 일반공급으로 전환되지 않고 탈락처리되므로, 반드시 우선공급 자격요건 및 자격서류의 발급가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위 및 배점항목은 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기준

• 순위

1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에 거주하는 자
2순위	신청자 본인이 행복주택이 위치하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외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주거약자용 배점 (* 중증장애인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자를 말함)

구 분	3점	2점	1점
① 부양가족수(공급신청자 본인 제외)	3인 이상	2인	1인
②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기간 *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	5년 이상	3년 이상 5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③ 장애정도	중증장애인*	-	그 외 장애인

※ 중증장애인 배점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시에만 인정

■ 신혼희망타운 주거약자용 주택 경쟁 시 입주자 선정기준

구 분	입주자 선정 순서
우선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해당 순위 지역의 거주기간이 오래인 자 → 추천
일반공급	순위 → 주거약자용 배점 → 추천

4.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공급일정

청약신청 (인터넷 PC/모바일)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서류제출대상자 서류제출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전자계약)
'25.11.18(화) 10:00 ~ 11.20(목) 16:00	'25.12.1(월) 16:00 이후	'25.12.2(화) ~ 12.5(금)	'26.4.9(목) 16:00 이후	'26.4.21(화) 10:00 ~4.23(목) 16:00
인터넷 (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서류제출대상자 명단'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만 가능 ※ 등기우편은 '25.12.5.일자 우체국소인분까지 유효 ※ 일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등기우편 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계양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확인방법)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 확인 → '당첨/낙찰자 명단' 조회 또는 ARS(1661-7700)	(전자계약)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https://irts.molit.go.kr)

※ 24시간 신청가능
(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 청약 신청내용 변경은
청약 접수기간 중 가능
(청약 마감이후 변경불가)

• 입주자격 조사가 지연될 경우 당첨자 발표, 계약체결 일정 등은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LH청약플러스 공지사항에 별도 게시합니다.

• [청약접수]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인터넷(<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App명칭 : LH청약플러스) 신청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의 경우 2025.11.17.(월)까지 ☎032-890-524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인터넷신청자께서는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이후에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되었는지 여부를 본인 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은 해당서류들을 반드시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을 시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에서 제외합니다.

- 우편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계양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대상자 확인방법 : LH청약플러스>청약>청약결과확인>서류제출 대상자 명단 조회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및 서류접수는 인터넷(PC 또는 모바일) 청약자에 한하며, 현장접수자(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정보취약계층에 한함)는 신청접수 시 제출한 서류로 갈음합니다.

• 당첨확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또는 ARS(1661-7700)으로 가능합니다.

■ 입주자격 검증

• 행복주택 입주자격은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가 무주택,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 등 해당 세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고일 이후 변동된 자산, 소득 금액이 조회된 경우 해당 금액을 당사자의 자산,소득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 무주택,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자에서 제외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 결과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부적격 통보를 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신청인이 직접 해당 소득자료 제공기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된 자료의 출처기관)의 자료를 수정한 후 동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접수 및 처리하며, 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빙자료(제공기관의 확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분은 부적격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별도의 통지 없이 부적격 처리합니다.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후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갱신계약이 거절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행복주택 입주 신청자격별 해당 세대의 보유 자산 중 금융자산을 금융기관으로부터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하여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안 내 사 항
동의서 수집 사유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동의서 서명 대상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서명	정보 제공 동의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동의서 유효기간 등	금융기관에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서명자에 통보하지 아니하는 것을 동의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시 유효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부담하여야하나, '정보 제공사실 미통보' 서명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 통보를 생략하여 해당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인터넷(PC) 청약 방법

* 청약방법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인증서(공동인증서 등)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 인터넷 청약시스템을 이용하실 경우, 반드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셔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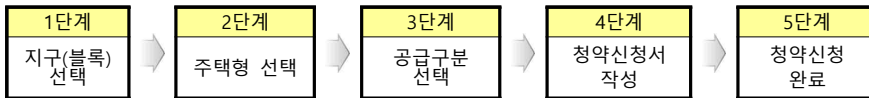
■ 인터넷(모바일) 청약 방법

* 청약방법 : 모바일 앱(LH청약플러스) 인증서 로그인>청약>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앱 (“LH청약플러스” 검색) 설치 : 아이폰 → 앱스토어, 안드로이드폰 → 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앱다운
- * 모바일 청약시스템을 이용하기 위해서, 전자공동인증서 발급(반드시 개인용 공동인증서로 발급) 또는 네이버 등 인증서 발급을 신청접수일 이전까지 미리 완료하신 후, PC에서 스마트폰으로 공동인증서를 복사하여야 합니다.
- * 공동인증서 : 5대 인증기관(금융결제원, (주)코스콤, 한국전자인증(주), 한국정보인증(주), 한국무역정보통신)의 공동인증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들 기관의 공동인증서 중 하나를 소지하셔야 신청 가능합니다.
(인터넷뱅킹 사용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 사용가능)
- * 모바일앱 사용시 wifi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됩니다.
- * 모바일청약은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기기에서 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 LH 청약플러스 앱(App)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및 유의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절차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시 유의사항

-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신청자격, 소득 등 입력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사전에 본인이 직접 해당서류 등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모바일청약은 신청자가 신청(입력)한 내용을 근거로 당첨여부가 결정되므로 누락 등 착오입력에 따른 당첨 탈락, 청약시 입력한 내용과 제출서류 내용이 다르거나 허위 신청(입력)으로 인한 당첨 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어 정확한 신청(입력)을 위한 주의를 당부 드립니다.

○ 기타사항

- 인터넷(PC.모바일) 청약 접수기간은 **접수시작일 2025.11.18.(화) 10시부터 접수마감일 2025.11.20.(목) 16시까지로 접수기간 중에는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단, 시작일과 마감일 제외)** 청약 마감시간까지 접수완료(저장기준)하여야 하며, 접속자 폭주 등으로 인하여 예상하지 못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마감에 임박하기 전에 미리 여유 있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접수기간 중에는 신청내용을 변경(수정 또는 삭제)할 수 있으며, **마감시간 종료 후에는 변경이 불가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모바일) 청약의 경우, 시스템 장애 발생 가능성을 감안하시어 정상적으로 접수하신 내역을 PC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C에서 수정.취소 가능)
- 인터넷 청약하기 1~2일 전에 청약신청 처리할 PC에서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진행하여 정상적으로 처리가 되는지 확인하시고 충분히 가상연습을 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및 서류제출 방법 (등기우편 접수만 가능)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일 : 2025.12.1.(월) 16: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조회

- P C : LH청약플러스→『청약』클릭 →『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청약』→『청약결과확인』클릭 →『서류제출대상자명단』클릭

○ 등기우편 접수 : 서류제출대상자로 선정된 분은 서류제출 기한(25.12.5.)내에 등기우편으로 해당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서류제출 시, **서류제출기간 마감일(25.12.5.)의 우체국 소인이 찍힌 등기우편까지만 유효하게 접수**처리됩니다.
-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며 기한 내 미제출시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당첨(예비)자에서 제외합니다.
- 일반우편 및 택배로는 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제출 장소(등기우편발송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LH인천지역본부 4층 주거서비스팀 인천계약 A3블록 행복주택 담당자 앞

※ 서류제출 시, 봉투 겉면에 **블록명과 이름, 접수번호, 신청형**을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현장 신청자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된 현장 접수자는 신청시 제출한 서류로 서류제출을 갈음하며, 서류제출 기간에 추가로 서류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5. 신청서류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5.11.06) 이후 발급한 서류에 한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아닌 경우 당첨취소 또는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숫자 모두 기재되도록 발급받아 제출 (주민등록번호 표시 예시) 123456-1234567

※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위변조 등으로 허위임이 발견되는 때에는 당첨 및 계약 취소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자 자격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의

■ 공통 제출서류

- 인터넷(PC.모바일) 신청자 : 서류제출대상자로 확정된 후 서류 제출시점에 제출
- 현장 신청자 : 접수시점에 제출

제출서류	비 고	부수
개인정보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2)	• (작성 대상자)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 전원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해당 세대 : 공고문 3페이지 확인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에 한하여 작성 * 14세 미만의 자는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1통
금융정보 등 (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공사양식 1-4)	• (동의방법) 공고에 첨부된 동의서에 대상자 전원이 정자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공사양식 1-3)	• (작성 대상자) 세대구성원 전원 * "예비신혼부부"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한하여 작성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LH공사 임대주택의 임차보증금일 경우 제출 불필요 ※ 확정일자 대신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필증으로 갈음하여 제출 가능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비상장주식 : 증권사 조회내역 주식보관증 등 종목 수량 및 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출자금/출자지분 : 출자증서 사본 * 장기카드대출(카드론) : 신용카드사가 발급한 증빙서류 ※ (주의)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1통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사항 확인서 (공사양식 1-1)	• (제출대상) 전체 • (동의방법) 내용 확인 후 신청자 서명 또는 날인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신청·접수가 거부됨	1통
주민등록표등본 (전부표기)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모두 제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공급신청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1통
주민등록표초본 (전부표기)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해당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자 • 우선공급신청자의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신청자)의 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 반드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로 발급 • "한부모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도 반드시 제출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중 예비신혼부부는 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 각각 제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제출	1통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1통

임신진단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급받은 임신진단서 (출생 신고 전인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정의 자격으로 주택을 신청하는 신청자 중 태아를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태아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입양관계증명서	<아래 해당자만 제출> • 입양자녀가 있어 소득·자산기준을 상향하여 인정 받으려는 경우	1통

■ 공급대상자별 추가 제출서류

공급대상		제출서류	발급처
신혼부부 계층	신혼부부	• 공급신청자의 혼인관계증명서 (※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행정복지센터
	예비신혼부부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신청 확인서 (공사양식 2-1)	-
		• 행복주택 예비신혼부부 세대구성 확인서 (공사양식 2-2)	-
		• 대표신청자가 아닌 신청자(예비배우자)의 신분증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 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 확인을 위해 1)혼인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2)주민등록표 등본, 3)가족관계증명서(※ 반드시 상세증명서로 발급, 대표신청자와 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을 경우는 각각 제출)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행정복지센터
	해당자만 제출	• 거주지가 아닌 소득 근거지로 신청한 경우 및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맞벌이 신청자) -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전체이력'으로 발급)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등 타공적연금 가입자의 경우 해당 연금 가입증명서 추가 제출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 중인 직장의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해당서류로 직장소재지 확인 불가시 재직증명서(재직증명서 제출 불가한 직종의 경우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등) 추가 제출	국민연금공단 국세청 또는 해당 직장
		• 공고일 현재 소득활동중이나 국민연금 가입증명서상 '납부예외', '임의(계속)가입', '미가입자', '지역가입자'인 경우 - 신청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 - 그 외 :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위촉증명서), 사업소득지급명세서 등 • 공고일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 미가입자는 입주전까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사본 제출 ※ 입주 전까지 미제출 시 입주가 불가하며,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 처리됨	국세청 해당직장(세무서)

■ 주거약자용 주택 신청자 추가서류

대상(해당)자	제출서류	발급처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확인(필수서류)	-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장애인 증명서	행정복지센터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국가유공자 확인서	국가보훈부 각 지청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12.7.1전 등록자 : 지원대상자 확인원 ·'12.7.1이후 등록자 :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서	
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 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 확인서	
⑦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사람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⑧ 중증장애인 배점을 받으실 경우 [주거약자용 신청자에 한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주민센터,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관할지사

■ 현장신청시 본인 또는 대리인 확인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본인 직접 신청할 때	①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 도장(서명으로 대체 가능)
배우자가 대리 신청할 때	① 본인(신청자) 및 배우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② 본인(신청자) 도장 ③ 본인(신청자)과의 관계 입증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
기타 대리인이 대리 신청할 때	① (인감증명방식) 본인(신청자)의 인감증명서, 위임장(인감증명서상의 도장일 것), 본인(신청자)의 인감도장 ② (본인서명방식) 본인(신청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신청자)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 수임인 서명란에 대리인 성명을 반드시 명기 ③ 공통 : 본인(신청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만 인정)

6. 당첨자 발표 및 계약 안내

■ 당첨자 발표 ['26.4.9.(목) 16시 이후]

- 주택의 동·호는 공급대상자 및 신청형태에 따라 동별, 층별, 항별 구분없이 전산 추첨합니다.
- 미신청, 미계약에 따른 잔여 동·호가 발생하여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LH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ARS(1661-7700)를 통해 당첨 발표일로부터 30일간 확인할 수 있으며, 당첨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계약 체결을 못한 경우의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청약」 → 「청약결과확인」 → 「당첨/낙찰결과조회」, 클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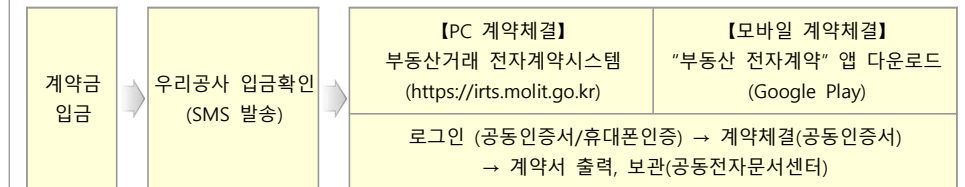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자로 선정하며, 예비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해약시 순위에 따라 계약 체결합니다.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시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음.**)
- 선순위 예비자의 계약결과에 따라 변경되는 입주 예비순위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조회방법**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고객서비스」 → 「나의정보」 → 「예비입주자 순위」, 클릭
- 입주대상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소명이 불가할 경우 당첨자격이 취소됩니다.

■ 계약안내

-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계약담당부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가 주소 변동사항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안내 및 입주안내를 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계약금은 계약 전 안내되는 계좌로 납부 가능합니다.
- 계약 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시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예비입주자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자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 다른 공공임대주택(통합, 국민, 영구, 행복)의 입주대기자 명부에서 모두 제외됩니다.** 입주여부는 실입주일을 말하며, 입주시정기간 후는 임대보증금 완납으로 판단합니다.
- 현재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의 후순위로 예비자순번이 결정됩니다.
- 예비자로 선정되어 예비순번을 받으신 세대의 경우, 추후 공사발생 여부에 따라 예비순번대로 계약이 진행되며, 계약일정은 별도 안내드립니다.
- 입주자 계약해지, 퇴거 등으로 공가주택이 발생할 때 예비순번에 따라 공급되며 선호하지 않는 동호가 배정될 수 있습니다.

■ 전자계약 ['26.4.21(화) 10시 ~ 4.23(목) 16시]

- 계약금 입금 후 온라인 계약기간 내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https://irts.molit.go.kr>)'에서 온라인으로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개인별 가상계좌 및 온라인계약 상세 절차는 추후 당첨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전자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확정일자 자동 부여 및 버팀목전세대출 이용 시 대출금리 인하 등 혜택이 제공됩니다.
- 「우리공사 입금확인」은 전자계약 기간 내 평일 업무시간(09:00~18:00)에 한하여 확인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및 SMS 발송까지는 일정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SMS는 신청접수 시 “SMS 수신동의” 한 신청자에 한하여 발송하고, 수신동의하지 않은 신청자에게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 「전자계약 체결(전자서명)」은 우리공사의 입금확인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상시 가능하며, 계약금 입금 후 전자계약 기간 내 전자서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현장계약을 하셔야 합니다.
- 전자계약 체결 시 계약서는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하고, 임대계약 종료 시까지 열람·출력·저장이 가능합니다.

■ 현장계약

- 정보취약계층 등 인터넷 전자계약이 어려운 분의 경우 ☎032-890-5245로 사전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현장 계약만 가능하며, 서류미비 시 계약이 불가합니다.

공통서류	대리계약 시 추가서류
• 계약금 입금증 또는 입금사실 확인 가능한 정리된 통장 • 계약자 도장 (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및 여권정보증명서,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처리)과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당첨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동의서(공사양식), 가족관계증명서, 법정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배우자 공통서류 외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공사양식 3), 당첨자 인감증명서(본인발급분), 당첨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일 것)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된 여권은 여권정보증명서 생략가능

7. 무주택 · 소득 · 자산 검증기준

■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및 판정기준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소유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에 대한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포함)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 주택의 경우(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등본 : 등기접수일 (미등기 주택인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등본상의 처리일)
- 2. 건축물대장등본 : 처리일
-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분양권등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공급계약체결일
2. (분양권등의 매매가 이루어진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서 상 매매대금 완납일
3. (분양권등의 상속 등이 이루어진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 상 명의변경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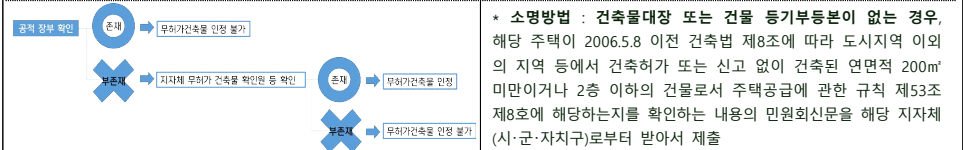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이하)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 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⑦ 무허가 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참고) 무허가건물 확인 절차



- ⑧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은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
- ⑨ 매매 외 상속·증여 등의 사유로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주택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을 신청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 ⑫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소득·자산 산정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받으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자료입니다.

-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 처리합니다.
-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입주자격 중 주택, 소득, 부동산, 자동차, 일반자산, 금융부채 외 부채의 산정시점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이며,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산정시점은 조사기준일입니다. 다만, **사업주체가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입주자격은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구분		산정방법
총 자산	소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해당 세대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부동산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건축물 : 공시가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해당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중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 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 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되,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금융자산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예금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 최종 시세가액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액면가액 • 예수금 : 잔액 • 연금저축: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기타자산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준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준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부채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자동차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한하여 산출하되,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구분	항목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자료 출처	
소득	근로 소득	상시근로소득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제청중합소득금액(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국제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자활근로소득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공공일자리 소득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사업 소득	농업소득	경종업(耕種業), 과수·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 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제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임업소득	영림업·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어업소득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	도매업·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증
	재산 소득	임대소득	부동산·동산·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이자소득	예금·주식·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연금소득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국제청 종합소득(재산소득)
기타	공적이전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	

	소득	소득	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 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처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처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총 자산	일반 자산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지방세정 자료
	자동차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기타 자산	임차보증금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국토교통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선박·항공기	- 선박 :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 항공기 :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지방세정 자료
		입목재산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지방세정 자료
		회원권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지방세정 자료
		조합원입주권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지방세정 자료
		어업권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	- 지방세정 자료

		어업에 대한 권리	
	분양권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금융자산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채 등 유가증권	- 금융정보 조회결과
		예금, 적금, 부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금융기관 대출금	- 금융정보 조회결과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직권조사 등록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자동차	임대보증금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제공 소득·재산 항목 설명 및 자료 출처

8. 유의사항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 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관련항목	유의사항				
거주기간 및 재청약에 관한 기준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table><tr><th>입주자격</th><th>최대 거주기간</th></tr><tr><td>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td><td>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td></tr></table> 최대 거주기간이 만료되기 2개월 전까지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연장된 거주기간이 만료되는 경우도 해당)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임차인의 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재청약 기준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거나 재공급을 통한 신규 입주희망자가 없는 경우에는 2년씩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입주자격	최대 거주기간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무자녀(10년), 자녀 1명 이상(14년)			

예비입주자	■ 예비자의 계약 및 입주자격 공급대상자별 예비자로 선정 및 대기 중 공가가 발생함에 따라 입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예비자로 선정된 해당 공급 대상자별 자격요건을 만족하여야 계약 및 입주가 가능합니다.														
갱신계약 등	■ 갱신계약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격은 최초 계약 시 뿐만 아니라 갱신계약 시에도 유지하여야 합니다. 거주 중 입주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바로 퇴거하지는 않으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갱신계약자격은 공급대상자별 일반 공급대상자의 신청자격과 동일합니다. * 다만, 아래 경우는 제외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의 경우 혼인 중일 것, 공급신청자의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나이가 6세이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 이 주택의 갱신계약 시 적용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국토교통부고시 「행복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주변 지역의 시세를 감안하여 인상율을 적용한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거주 중 소득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기간 종료시점 기준으로 산정된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5 제2호가목에 따른 철거민 등 기존거주자 중 해당 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시점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를 초과하는 비율에 따라 아래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됨 <table><tr><th rowspan="2">소득기준 초과 비율</th><th colspan="2">할증비율</th></tr><tr><th>최초 갱신계약 시</th><th>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th></tr><tr><td>10%이하</td><td>110%</td><td>120%</td></tr><tr><td>10%초과 30%이하</td><td>120%</td><td>130%</td></tr><tr><td>30%초과</td><td>130%</td><td>140%</td></tr></table> 소득(소득세법 제19조제1항 사업소득 및 제20조제1항 근로소득)활동 변경에 따른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입주자의 갱신계약시 임대조건은 별도 갱신계약 안내에 따름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행복주택 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요건을 초과하면 공급대상자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에 130%의 할증비율로 산출된 금액이 적용됩니다. (단, 자산요건 중 자동차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는 갱신계약 불가) 두 개 이상의 항목에서 할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가장 높은 할증비율만 적용됩니다.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소득기준 초과 비율	할증비율														
	최초 갱신계약 시	2회차 이상 갱신계약 시													
10%이하	110%	120%													
10%초과 30%이하	120%	130%													
30%초과	130%	140%													
신청자격	이 주택의 입주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서약서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라 분양권등(분양권 또는 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며, 입주자 선정(당첨자 발표)일 전 분양권등을 취득한 경우 당첨이 되더라도 계약이 불가하고, 계약을 하더라도 이후 부적격 해지(위약금 부과)되므로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중 주택소유여부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소득·자산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하여 확인·검증합니다. 이 주택의 신청자격인 공급대상자격, 무주택자·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등을 위반할 경우, 계약이 취소되거나 갱신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입주자격 조사결과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자동차 등록 관련	- 임대주택 단지 내에서는 임차인 등의 소유차량(임차인 전용 리스차량 및 근무회사 차량 포함) 이외 타인소유의 차량은 주차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등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 및 그 임차인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주민등록법상의 세대구성을 말함)하여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을 말함 - 국토교통부 고시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일정 가액(2025년 11월 현재 4,563만원, 자동차가액은 국세청 홈택스(https://www.hometax.go.kr)에서 조회 가능하며 개인별 차량가액은 조회금액과 다를 수 있음)을 초과하는 차량의 단지 내 차량등록은 허용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복입주 금지	-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임대차기간 종료 전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분양 전환되는 주택 포함)에는 이 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합니다.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배우자 포함)는 이 주택에 입주할 때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중복 입주하고 있는 주택 중 어느 한 쪽의 계약을 해지해야 합니다. - 공공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신청, 공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다른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세대구성원이 본 임대주택에 당첨되어 계약 또는 입주 전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 중복입주로 보지 않아 본 임대주택 입주가 가능합니다. 단, 배우자 세대분리는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신청 서류	-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후 발행된 것이어야 하며, 다른 기관에서 발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른 것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을 사용하여 이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에 동일한 통장을 재사용하여 다른 분양주택 또는 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거나 LH청약플러스에서 직접 변경하여야 합니다. (주소변경 방법: LH청약플러스 → 고객센터 → 나의 정보 → 개인정보변경)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 납부한 계약금은 소정의 위약금을 공제하고 환불함.
지구 및 단지특성	■ 지구 여건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기반시설은 국토교통부 고시(제2023-677호)로 변경 승인된 '공공주택지구 지구계획(2차)'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나, 도로선형 변경, 승인, 조건이행, 지자체 의견, 상위계획 변경, 민원 등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기반시설 설치계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계양구 굴현동, 동양동, 박촌동, 병방동, 상야동, 경기도 부천시 대장동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사업지 북측으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남측으로 경명대로, 서측에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동측으로 별말로가 인접하고 있습니다. - 지구 서측에는 인천도시철도 1호선 박촌역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내 홍수의 영향을 저감하기 위한 저류시설이 3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지자체 계획, 상위계획 변경 등 사업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계획된 공원·녹지는 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의에 의하여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측에는 서운산단 및 계양산단(예정)이 위치하여 교통문제, 분진 및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지구 서측으로 계양산, 서부간선수로, 북측으로 한강, 아라천, 굴현천, 동측으로 굴포천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 지구 서측으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와 지구 밖 북동측에 김포공항이 인접하여 차량 및 항공기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변 일부에 방음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동측에는 부천대장 공공주택지구가 계획되어 있어 해당 사업 추진에 따라 교통, 분진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남동측에는 굴포하수처리장(북부수자원생태공원), 부천시 자원순환센터(폐기물 소각 및 음식물 처리 등) 등 부천시 환경기초시설(약 1.6km)이 위치하고 있으며, 지구 내 북측 근린공원에 재활용시설이 계획되어 있어 악취 및 소음에 따른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지구 인근 방공시설 등 군사시설로 인한 제약사항이 있을 수 있으며, 지구 인근 군 부대 사격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므로 소음 등에 따른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단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지구계획(토지이용계획 포함), 제영향평가, 에너지 사용계획 및 기반시설 설치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단지조성사업이 완료될 때까지 각종 기반시설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현장 및 사업여건 등에 따라 추진일정 및 사업준공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는 사업진행지구이며 주변도로, 공개공지, 공공조경, 공공보행통로 등 건축 및 토목공사와 민간 건축공사 등이 일부 진행 또는 본 단지 입주 후에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교통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공사차량·외부인 통행 및 생활여건시설 미비 등에 의한 불편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에는 일반분양·공공분양·공공임대, 행복주택, 뉴홈 등 다양한 공동주택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 당해 지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확인을 통하여 단지 주변 시설 및 구조물(지하차도, 보도육교, 생태육교, 변압기, 버스정류장 등) 계획을 확인 후 계약에 응해야 하며, 구조물로 인한 소음 및 미관 등을 이유로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해지 요구 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지구외의 도로 및 광역도로, S-BRT 등 기반시설은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또는 지연될 수 있으며 해당사업 관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경우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구내외 도로, 상하수도, 학교, 공공시설, 공원, 녹지 등의 각종 기반시설 설치의 사업추진과 정에서 국가, 지자체, 교육청 등 관련기관과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취소되거나 지연될 수 있으며 입주 후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일부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용지매각 일정에 따라 주민 입주 후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지구계획의 변경, 해당 관청의 학교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설립계획 및 학생 수용계획은 향후 공동주택 입주 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 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교육시설, 공공시설 등의 용지는 해당기관의 수요 또는 매입계획이 없을 경우 타 용도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신설학교 배정 및 인근 학교 배치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해당관청(인천광역시교육청) 문의 및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 전에 해당 현장 및 토지이용계획 등을 반드시 방문하여 소음, 조망, 일조, 도로, 진입로 등 단지 및 주변여건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기되지 않은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외 유해시설 및 혐오시설의 위치는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단지 및 주위 환경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가로등, 공원등, CCTV 및 교통시설물 등 공공시설물이 지구내에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 통신, 수도, 가스, 지역난방 등 기반시설 설치에 따라 지상에 시설물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

	■ 단지 외부여건 - A-3블록은 지구 내 최초 입주 공동주택블록으로서 주변 조성공사, 건축공사 및 공원·녹지조경공사 등 진행에 따라 입주 후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및 교통장애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단지 주변 개발계획은 미확정 상태로, 관계기관의 지구계획에 의해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중로2-계5, 중로2-계6, 중로2-계7 등 도시계획도로에 연결하여 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주변 아파트 및 건축물의 신축과 주변 시설물의 변경 등으로 단지 내 아파트 동별·향별·층별 위치에 따라 소음, 일조, 조망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외부 도로 및 진출입구 개설에 대해서 관할 지자체, 경찰서 등 관계기관 협의의견에 따라 각종 안내표지판(대형 포함), 보행자 무단횡단 방지철펀스 등 각종 교통안전시설물이 추가, 수정,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경계 옹벽 및 단지내외 보도 및 차도포장 재질 등은 지구단위계획 법령 또는 현장여건 등에 따라 재질·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형여건 등에 따라 단지 내외부 구간에 난간, 옹벽 등 구조물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당해 지구 내 공원, 녹지, 공공공지 등은 현재 상황 및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구계획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설립계획의 변경으로 인하여 당해 지구 내 특수학교 등 학교부지가 취소 및 위치,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당해 지구 내 계획 중인 신설학교는 교육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근 대중교통(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의 노선은 관할 지자체에서 노선을 관리함에 따라 입주 후 노선변경 전 까지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계획도로상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인천계양 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 내에는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 폐기물 재활용시설, 변전소, 오수중계펌프장, 시회복지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이며, 지구 인근에 부천시 환경기초시설 등이 있으므로 계약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서측으로 연결녹지, 남측으로 인근에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가 설립될 예정이며, 북측에 커뮤니티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등이 있어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사업계획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 주변 도시계획도로는 최종 측량결과 및 인허가 변경 등에 따라 도로 폭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및 인접 경계부의 담장 및 구조물은 추후 토목공사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마감처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인접 도시 계획 도로상 전력 지중화용 지상기기 및 노상 시설물(가로등, CCTV, 소화전 등), 교통신호등(신호기), 횡단보도 등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여부와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보행 및 자전거도로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부여건 - 본 단지는 도시계획도로에 면하고 있고 일부 동의 저층 레벨은 인접 도로보다 낮게 조성되어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 먼지 및 진동, 사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일부도로는 보·차도 혼합블록으로 설치되어 차량 이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비상차로 및 포장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 시 비상차량의 정차위치로 표기·활용될 수 있습니다.
--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조의2에 따른 본 단지의 지하 주차장 차로(주차장이 2개층 이상인 경우로서 지상에서 바로 진입하는 층에서 각 동의 출입구로 접근이 가능한 경우 해당 층의 차로로 한정한다)의 높이를 주차바닥면으로부터 2.7m입니다. - 최고 층수는 해당 동의 최상층 층수이며, 난방방식은 지역난방,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벽식 구조, 지하주차장 슬래브는 무량판 구조로 시공됩니다. - 지면의 단차 및 경사로에 의해 저층 세대의 레벨 및 동 출입 형태가 다른 동과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팸플릿,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붕은 평지붕으로서 최상층 세대에 다락방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차량 진출입구 및 지하주차장 출입구는 각 1개소가 설치됩니다. - 문주는 306, 307동 동측 출입구에 1개소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이동, 크기 변경, 추가 설치는 불가하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저층 세대는 단지 내외 차도, 보도, 조경수목, 기타 시설물 등의 계획으로 인해 사생활, 조망, 일조권 등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방범창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근린생활시설(상가), 어린이집, 운동시설 및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공동시설에 근접하여 배치된 세대는 소음, 냄새, 미관 저해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건축법 및 주택법을 준수하여 시공한 인접 건물에 의하여 일부 세대의 조망권 및 일조량이 저감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공용시설물, 옹벽 및 석축 등의 폭, 높이, 위치 등으로 일조, 조망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도, 조경, 주차장 등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 점유 등의 권리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및 그 외 시설물의 외벽체 문양과 색상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층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채광·환기창의 설치 위치는 아파트 동 배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일부 동 엘리베이터 홀 및 계단실의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각 층의 엘리베이터 홀 및 전실공간은 관련 법령에 의거 구조 변경이 금지되며, 세대가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외관 디자인 계획에 의해 일부 세대의 발코니 외측에 장식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물딩 등의 설치에 따라 동별, 층별, 호별 입면의 돌출 정도에 차이가 있고 강우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 및 성능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여건상 이사용 사다리차 등의 차량접근이 동·라인별로 제한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이사 전 반드시 이사 업체의 현장 확인을 요청하여 사다리차 이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지하주차장 동 출입구 가까이 배치된 주차계획(확장형 주차, 장애인 주차, 경차주차, 전기차주차 등)은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입주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주거동의 위치를 감안하여 설치되며 위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생활자원보관소(쓰레기분리수거대)는 일부 세대 내에서 보일 수 있고, 일부 동 인근에 설치되어 냄새 및 해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위치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

	- 자전거 보관소는 동별로 일정하게 배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차장은 전 세대가 위치에 관계없이 공동으로 이용하며, 단지 계획에 따라 동별 인근 일반 및 장애인용 주차대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탑(DA), 채광창, 옥외계단실 등 마감, 위치, 형태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마감재 특성상 차량 진출입 및 회전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등이 시공됩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 경사로 부위는 우기 및 동절기에 차량의 미끄럼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각종 지하층의 계단실, 엘리베이터 홀이 직접 연결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구획 일부 구간은 차량 승하차 시 지하주차장 기둥에 간섭되어 차량도어 개폐 등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과 지하주차장을 연결하는 각 동 통로공간(전실, 계단실, E/V실 등)은 특성상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진출입구 부근 출차주의 경광등으로 인해 인접 동에 눈부심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기단부 외벽 마감은 동별로 높이, 형태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명, 동표시, BI, 벽체줄눈 및 색채 등은 추후 관계 기관의 심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도로 폭 등은 사업추진 과정(인.허가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관할 소방서와의 협의의 결과에 따라 소방차 전용도로 및 구역의 위치, 개소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조감도에 표현된 외부 색채계획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외관, 주현관, 지하주차장 출입구, 옹벽, 조정 및 기타 시설물은 유관 기관 협의의 결과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거동 옥상 난간은 금속난간과 콘크리트 난간 조합으로 시공될 예정입니다. - 단지 내 어린이집 등 보육 관련 시설은 지자체 의견 등을 참고하여 국공립 또는 외부 위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운영방식에 따라 단지 외 지역주민과 같이 사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점 기준으로 도시기반시설의 실시설계 및 시공의 미완료에 따른 준공 시 대지면적 또는 경계 등의 증감은 확정측량을 통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 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법면 현황은 최종 공사완료 및 측량 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시공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현장 여건 변경으로 인하여 공동주택 성능등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최상층 세대의 경우 옥상난간, 태양광 설비 등 구조물(시설물)로 인해 강풍 및 우천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중 일부 시설은 입주 전후 한시적으로(최대2년) 입주지원시설 및 A/S센터 등으로 사용됩니다. - 팸플릿 등 각종 인쇄물에 표현된 옥상, 옥탑, 주동형태, 창호형태, 측벽디자인, 외부색채, 문주, 식재, 바닥포장, 조경관련 식재, 수목, 시설물, 어린이 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은 청약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유관 기관의 인허가 또는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주차대수는 648대(장애인주차 26대 포함), 근린생활시설 2대이고, 주차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305동, 306동, 307동 상가 가까이 지하주차장 진출입구가 계획되어 있어 이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고 자동차 전조등에 의한 눈부심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게스트하우스는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 식재, 시설물, 포장 등 조경계획, 주변환경, 야외시설, 저층부 외관, 동 현관, 지하 출입구, 건축 및 토목옹벽, 세부디자인 등은 각종 인허가 또는 현장 여건에 따라 재료, 형태, 크기, 재질, 색채, 위치, 패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단지 여건 등 제반 사항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의 경우 확인 또는 문의 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차단기 설치 위치 및 버스정차 구역은 현장 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출입구 차량 입차로 및 출차로 계획은 교통영향평가 등 교통계획에 따라 차로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도로 선형은 유선형으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E/V 승강로와 인접되어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소음이 세대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승강기 설치 인승, 속도 적용기준은 관련 법률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의한 세대 조합별 운행 층수에 의한 규격으로 적용 설치될 계획이며,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승강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저층 세대는 내진 구조보강에 의하여 벽체 두께가 증가해 상부층 보다 공간별 안목치수가 다소 작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단지 내에는 「주택법」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제12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 공사는 아파트 사용검사를 신청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운영에 관한 협약을 인천시 계양구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에 찬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복카페, 방과후교실, 경로당 등), 어린이집 등에 내부 시설물(인테리어 등)은 설치되지 않음. 단, 피트니스센터에 운동기구가 제공될 예정이며 설계 및 제공되는 운동기구(의자, 소파 등 이동식가구 등 기타 비품은 일체 제공되지 않음)에 대해서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공법 적용시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해 지하주차장에 환풍이 설치되어 있고 환풍 상부 지상에 환기탑(DA)이 설치되어 환기팬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 등으로 보행에 불편을 느낄 수 있으며,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환기탑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연결승수관 주변 마감(석재 등)으로 인하여 일부 저층세대에 시야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단지 내 기반시설이므로 위치 이동 및 크기 변경에 대한 요청이 불가하고 이로 인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펌프실 및 저수조실은 302동 인근 지하에 계획 및 설치됨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진동, 매연 등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전·후면 혹은 측면에 제연환풍 급기구가 위치하고 있어 미관저해,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기실, 발전기실 상부에 환기탑(DA)이 설치될 수 있어, 저층세대 시야차폐 및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먼지, 매연 등 보행자 통로주변에 설치로 인한 보행 시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엘리베이터 내부 천장 공기 유입은 환기를 위한 환기팬에 의한 것이며 냉방장치(에어컨)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 당해 지구는 지역난방 사업자가 공급하는 중온수를 열교환을 통해 온수를 생산하여 각 세대에 공급하는 지역난방지구입니다. 따라서 입주민의 개별적인 취향에 맞춘 고온의 바닥난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의 외부(1층 또는 지붕층)에 실외기가 설치되며, 가동 시 일부 인접 세대 및 보행자는 소음·먼지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 지하주차장에는 전기차 충전설비는 총 33대(급속충전기 2대, 완속충전기 31대)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설치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 충전구역 내 주차 및 충전 방해행위가 있을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충전설비의 기존 설치 위치 이동 및 추가 설치는 불가합니다.) - 302동 인근 지하층에 전기실, 발전기실이 위치하고 발전기실 상부에 환기구(D-A)가 설치되어, 저층세대에 시야차폐가 발생할 수 있고 비상발전기의 주기적 시험가동 및 비상가동으로 인해 소음, 진동, 열풍 및 매연이 일부 세대와 보행자 통로주변으로 전달되어 생활의 불편을 느낄 수 있고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자세한 위치는 단지배치도 참고) - 아파트 및 상가 전력공급 설비인 한전 PAD 스위치 및 PAD 변압기가 단지 내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인접 세대 미관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단, 관계기관 협의 결과 및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1층 및 저층부 세대는 단지 내 보안등 및 방범CCTV 설치로 인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304동, 305동, 306동의 지붕층과 지하주차장 1층, 2층에 구내용 이동통신설비 중계장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서비스 안테나가 지하층, 지붕층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단, 설치장소 및 수량은 이동통신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307동 옥탑 지붕층 바닥에 지상파(디지털)안테나 및 무궁화 위성안테나가 설치될 예정이며, 전파 수신 여건에 따라 설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마트 우편함 및 무인택배함은 통합형으로 각동 1층에 설치될 예정이며, 동별로 일정하게 배치되지는 않고 현장여건상 설치위치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CCTV는 관련법령에 따라 승강기, 어린이놀이터, 각 동 출입구와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선, 배관, 케이블, 유도등 등이 시공되며, 일부 배관이 노출되어 시공됩니다. - 단지 내 출입구에 디지털차량번호인식시스템의 주차관제(차량출입통제)설비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302동 뒤편 녹지에 한전 개폐기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 지하주차장 출입구 부근에 출차주의 경광등이 설치되며, 인근 동(305동, 306동, 307동, 상가)에 소음 및 눈부심 현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특성상 단지 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단지 주 출입구, 지하주차장 출입구 등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자동차 전조등, 야간조명효과 등에 의한 눈부심 현상 등으로 인한 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속한 주차유도와 주차가능공간 및 차량주차위치 확인이 가능한 AI 주차유도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 307동 지상1층에 관리사무소, 방재실 및 MDF실이 위치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301동~308동 8개동 지붕층에는 태양광발전설비 집광판이 설치되며, 태양광모듈 사양에 따라 각 동별 설치면적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낙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각 동 옥탑층 및 지붕층에 피뢰침 또는 피뢰 보호 설비가 설치됩니다. - 306동, 307동은 아파트 옥상 및 측벽에 경관조명이 설치되고 301동, 302동, 308동은 아파트 옥상에 경관조명이 설치되어 인근 아파트 세대 내부로 빛이 들어올 수 있으며, 운영·유지·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현재 단지 내 조경설계 진행 중으로 추후 식재 및 시설물 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단위계획 법령에 따라 단지 경계부에 담장이 설치되지 않으나, 단차 구간 등에는 입주자 안전을 위해 난간, 담장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소방관련 이동식피난기구(공기안전매트)가 설치되는 각동 전·후면 조경공간에는 식재가 제한될 수 있으며, 1층을 포함한 저층세대의 경우 식재 제한에 따른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 마감재 및 발코니 등

- 시설물의 위치, 구조, 색채 및 지반고 등은 추후 측량 결과와 지반 현황 및 각종 평가, 유관 기관의 심의 결과, 협의내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건물 외부, 주현관,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위 마감재는 관련 법규 및 심의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거동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등이 변경될 수 있고, 내부 마감 이 없으며(천장 단열 노출) 별도의 실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바닥 줄눈 및 트랜치 부위에 차량 통과 시 소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시공오차 발생으로 팽플릿과 모델하우스의 각 부위 치수는 본 시공 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팽플릿, 견본주택 등에 적용된 자재는 성능 향상을 위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품질, 품귀, 생산업체 부도 및 관계 법령 등에 저촉될 경우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감재는 주택형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며, 팽플릿, 견본주택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으로의 변경 요구는 불가하니 먼저 확인한 후 계약체결 하시기 바랍니다.
- 팽플릿, 견본주택, 모형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최종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의하여 시공될 예정이며, 변경 요구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팽플릿, 모형 등 단지 내 커뮤니티시설의 내부 구조 및 시설물에 대한 인테리어 계획은 신청자(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본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표현되지 않은 마감재(출입문, 손잡이 등)는 팽플릿에 기재된 마감재수준 이상으로 추후 현장 여건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결로 저감재는 외부와 직접 면한 부위에만 시공되고 부착 폭(두께)만큼 발코니 면적이 감소됩니다.
- 발코니, 실외기실 등은 비생활 공간으로 결로 저감재가 설치되지 않고 수성페인트 마감 처리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결로 또는 결빙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지속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가 필요합니다.
- 커튼박스 깊이, 길이, 단부 여장이 각 실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자의 생활환경(관상용 식물, 샤워, 빨래건조, 가습기 가동 등), 단열성능 및 창호 기밀성능 강화 등으로 세대내부 및 발코니에 자연환기량 감소 및 습도증가 시 결로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각 타입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 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와 관련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엘리베이터 홀(1층 및 지하층) 바닥의 경우 미끄럼 저항성능 확보를 위해 석재(혼드) 마감으로 시공됩니다.
- 향후 차별화 및 기능 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 사업계획이 변경이 될 수 있으며 옥탑, 지층, 측벽, 입면 등(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 길이 및 높이, 실외기 설치 공간 등) 디자인 변경과 일부동 세대 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해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에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세대별 조건 및 필수설비 시설물의 위치 조정에 따라 발코니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으며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의 경우 실외기실 창호의 규격이 작아 실외기 반입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창짝 탈형이 불가능한 경우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설치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체결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바닥재, 벽지 및 벽타일, 인조대리석 등은 실제 시공 시 자재의 고유문양 및 색상에 따라 육안상 차이가 날 수 있으며, 세대 내 목문을 및 시트마감 부위는 시공상 불가피하게 시공 자국이 보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일부 벽체는 경량벽체 또는 단열재 설치 등으로 입주 후 중량물 거치 시 일반 콘크리트 못으로는 거치를 낙하의 우려가 있고, 앵커못 등 견고한 고정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특히 벽걸이 TV설치 시 별도의 보강이 필요합니다.
-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상부장은 높이가 높아 개폐 시 불편할 수 있으며, 일반냉장고 및 김치냉장고 장의 폭은 세대 타입별로 (평면형태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천장 마감은 무기질계 뽕칠로 시공됩니다.
- 현관, 발코니, E/V홀, 욕실 등의 바닥 단차는 현장 여건 및 시공과정, 자재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단위세대 형별로 평면계획에 의거 주방가구, 신발장 등 가로 길이가 상이합니다.
- 일부 발코니에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이 설치되며,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홍통의 위치와 개수는 일부 변경되어 설치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우수 및 배수용 입상관 등의 간섭이 있는 경우 입상관 주변의 발코니 천장 마감이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다용도실 등에는 개폐 가능형 ABS 원형 환기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겨울철 개방 시에는 수도관, 전자기기의 동파 위험이 있으므로 입주민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 가구 천지, 레일 등 가구 공사용 하드웨어 및 약세서리류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설치되는 외부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연 자재가 사용된 경우 자재의 특성상 색상과 결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팽플릿에 표현된 줄눈(타일 등)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욕실 천장에 설치된 점검구는 별도로 고정하지 않으며, 문을 여닫을 때 등 기류에 의해 들썩임 및 소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전 팽플릿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향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내 다용도실 세탁기 상부에 건조기 설치하는 경우, 발코니 선반 활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외부 창호의 개폐 위치 및 방향은 동일 타입이라도 동 조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플로링보드, 주방가구, 금속제창 등의 자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령에 의거 중소기업 제품을 사용합니다.
- 타일 나누기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불박이 마감재(신발장, 불박이장, 욕실장, 주방가구 등)와 접하고 있는 벽, 바닥, 천장은 별도의 마감이 없습니다.
- 거실 아트월 폴리스타일 줄눈은 비워있습니다.(오픈 조인트로 시공)
- 주방 아일랜드 식탁은 하부 마감이 없으며 고정하여 시공됩니다.
- 세대 현관 디딤석(마루귀틀) 및 주방 상판은 자재 특성상 시공이유이 발생합니다.
- 욕조, 욕실장 및 욕실 거울 후면에는 타일 등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가변형 벽체(건식 고정 벽체)는 일반 콘크리트 벽체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의 차단, 단열 성능 등이 취약할 수 있습니다.
- 욕실 천장 높이는 바닥 타일의 마감 구배와 천장내 설비배관 설치 등에 의하여 도면상의 치수와 달리 일부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현관바닥, 펜트리, 욕실, 주방, 발코니, 아트월 등의 타일 나누기 및 줄눈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거실과 각 실사이 문하부 부위 등의 롬카펫, 플로링보드 이음 시공부위는 자재 특성 상 미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시공 과정에서 일부 세대는 품질기준을 결정하기 위한 샘플세대로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 출입문에는 손끼임방지 자재가 부착됩니다.(단, 다용도실, 실외기실 출입문은 제외)
- 소방 제연설비를 위한 외기 급기구가 각 동 외벽에 설치됩니다.
- 실외기실에 세대 환기용 유니트 및 덕트 등이 천장에 설치되며, 환기용 유니트와 덕트는 노출 시공됩니다.
- 세대 내 실내환기는 제1종 환기방식(강제급배기)을 적용하며, 덕트와 연결된 디퓨저는 거실과 침실 등 천장에 설치됩니다.(알파룸, 팬트리 등에는 배기 디퓨저만 설치)
- 세대 내 실내환기설비는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에어컨 실외기실이 세대 내부에 있어 에어컨 가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실외기실로 배출되는 온풍이 실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 실외기실 벽면과 바닥으로 에어컨 냉매배관 및 배수배관이 노출됩니다.
- 발코니 및 실외기실은 비난방 공간이므로 겨울철에 창문개방, 에어컨 실외기 그릴 개방 등에 의한 외기 유입으로 수전류 등에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관리에 주의를 요합니다.
- 일부 주택형은 발코니(세탁실)공간이 협소하여 대용량 세탁기 및 건조기 설치가 제한되거나, 세탁기문, 벽 및 기타 설비와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자동식소화기, 렌지후드, 배기덕트 등으로 인해 주방상부장 일부가 조정되어 수납공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전 세대 가스계량기 및 가스배관이 시공됩니다.
- 주방가구 중 싱크대 하부는 난방설비인 온수분배기 및 주위배관, 싱크배수구 등이 설치되므로 수납공간으로 사용하기 부적합하며, 싱크배수구 위치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에 감압밸브를 설치하여 균등한 급수공급압력을 계획하고 있으나, 급수펌프 구획별 또는 단지 레벨차에 의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주방배기는 옥상에 배기팬이 설치되고, 세대 렌지후드에는 팬이 설치되지 않고 댐퍼만 설치되는 공용배기방식이 적용됩니다.
- 최상층 세대의 경우 공용배기방식의 환기팬(주방 환기용) 및 동력, 무동력 흡출기(욕실 환기용)가 인접해있어 소음, 진동, 냄새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침실에 설치되는 온도조절기의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벽에 설치되는 약세사리(조리기구 걸이대, 컵 선반 등)는 전기 콘센트 및 도시가스 밸브의 간섭으로 인해 위치 및 형태, 규격 등이 타입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배관의 유지보수를 위한 PD점검구가 세대 내외 및 PIT층, 지하주차장에 설치됩니다.
- 욕실에 설치되는 수건걸이는 평형별 구조에 따라 길이가 상이할 수 있으며, 욕실 천장에 설치되는 욕실팬은 평형별로 설치 위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욕실 천장 내부는 직상층 세대 화장실의 배관이 통과하므로 소음이 있을 수 있으며, 천장에는 점검구가 설치됩니다.
- 욕실팬 작동 시 냄새 역류방지를 위한 전동댐퍼가 연동하여 작동하므로 댐퍼 작동에 따른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실내 환기설비의 환기성능을 유지하기 위해 입주자는 제품설명서에 따라 필터점검 또는 교체하여야 합니다.
- 세대 내 에어컨용 냉매매립배관은 거실 및 침실1에만 설치되며, 거실은 스탠드형,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설치됩니다.(냉매박스 설치 및 도배 후 스티커로 위치 표시함)
- 욕실 양변기는 절수형이 설치되므로 세정력이 다소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 소방 관련법에 따른 제연설비가 설치된 아파트 세대 현관 출입문에 차압측정공이 설치되는 세대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층 엘리베이터홀과 계절창고에 설치되는 환기설비 및 제습기의 가동으로 전기요금의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 일부 발코니에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며, 빨래건조대가 설치되는 발코니는 자체조명이 리모컨 스위치로 점등되며 별도의 조명기구는 설치되지 않습니다. (빨래건조대 조명기구는 LED등으로 임의탈착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 필로티가 있는 303,304,305,306,307동 저층부(3층)에는 완강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그에 따라 해당 공간의 창호 형태 및 문의 재질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 세대(완강기 설치세대는 제외-상부에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가 노출됨)실외기실에는 아래 세대로 탈출 가능한 바닥설치형 피난사다리가 시공될 예정이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부세대 하향식 피난구 사다리 전개를 저해하는 그 어떠한 물건을 적재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에 전기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기 및 환기유닛 전원용 콘센트에 한하여 설치됩니다.
- 세대 내 타일 및 아트월 나누기(거실, 욕실, 주방 등)는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부분에 타일 나누기 줄눈이 간섭될 수 있습니다.
- 세대내 동작감지기의 경우 1.2층 및 최상층은 발코니 및 침실, 거실의 창호 측면 천장부위 각 1개소에 설치되며, 그 외층의 동작감지기는 거실 창호 측면 천장부 1개소에 설치됩니다. (최상층 발코니 부위는 벽부형)
- 홈네트워크시스템 세대단말기(WallPad10"LCD,게이트웨이내장)는 방법서비스(도어카메라, 현관자석감지기 및 동작감지기와 연동), 제어서비스(가스밸브차단, 거실 및 침실1,2,알파룸 네트워크스위치조명, 난방온도, 디지털도어록), 대기전력 차단서비스(IoT콘센트 연동), 단지 공용기본서비스(공동현관통제시스템, 원격검침시스템, 차량통제시스템 연동)를 제공합니다.
- 스마트홈 생활정보기가 설치되며, 일괄소등(현관센서등 제외), 엘리베이터 호출 및 가스차단 기능을 하며, 화면에는 현재시간 및 외부날씨(온도, 미세먼지정보) 및 주차위치가 표현됩니다.
- 욕실2(부부욕실)에 설치되는 무선형 비상호출버튼을 누를 경우 월패드, 관리실, 경비실에 경보음이 울리게 되며, 설치제품에 대한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세대분전반은 알파룸 문 뒤 벽체에 설치되고 노출로 인해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내 통신단자함은 세대 타입에 따라 현관창고 또는 알파룸 문 뒤 벽체에 설치되고 미관이 저해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내 조명기구, 홈네트워크 및 배선기구류, 통신단자함 및 세대분전반 등의 설치위치, 사양 및 수량은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옵션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 구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식탁용 조명기구의 위치는 보편적으로 식탁이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설치되며, 위치 이동은 불가합니다.
- 최상층 세대의 발코니 조명기구, 발코니 동작감지기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 또는 벽부형으로 설치됩니다.
- 최상층 세대의 스피커는 벽부형으로 설치되며 최상층을 제외한 기타세대는 천장형으로 설치됩니다

■ 초·중·고등학교 학생배치에 관한 사항

- 학교배정은 관할 교육청에서 행정구역 및 학생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추후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기관	문의처
인천광역시 교육청	032)-420-3303, 0143, 8232

	- 학교 및 학군의 경우 교육청의 여건에 따라 청약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향후 사업계획(입주시기, 세대수, 주택면적)의 변경, 교육정책 및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학생 배치계획 변동요인 발생 등 주변 여건 변화에 따라 학생배치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구 내 학교 등 각종 교육시설은 학교설립 관련 법령 · 지침 변경, 학생 수용여건, 학생 수용계획 등에 따라 해당 관청의 학교 설립시기 조정 및 설립계획 보류(취소)요청 등에 의하여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반 사항 - 사업승인도면과 실시설계도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설계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택규모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준공 시 확정측량)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증감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사업주체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세대 당 대지 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준공 시 확정측량)로 인해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는 공사 중에 품질확보 및 시공성 검토를 위하여 시공기준 적용 주택(현장 견본 주택)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건설, 운송, 가설장비, 레미콘 등)의 파업,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련 법령의 변경 등 예상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지 내외 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불편 등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타사 또는 당사 아파트를 비교하여 추가적인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 아파트와 충분히 비교검토 후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과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 표현의 오류 및 오기 등의 수정과 성능의 개선 및 품질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인·허가 또는 설계변경 등은 사업주체가 결정합니다. - 현장 여건의 반영, 구조·성능·품질 개선 등을 위하여 적절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의 사용 및 운영 방안은 실입주 후 입주민 자치협의기구(가칭)에서 결정하여 운영되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팸플릿 등에 표현된 각 단위세대 평면의 치수는 팸플릿 제작 과정상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벽체 중심선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안목치수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 적용된 조감도, 투시도, 이미지컷 등은 신청자(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개략적인 참고자료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제작과정에서 오류·오기·오타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 중 단위세대 내부에 설치된 인테리어 소품가구, 디스플레이 가전제품, 기타 전시용품 등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팸플릿 등 각종 홍보물에서 확인이 곤란한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용량·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승인도서에 의하며,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적용된 내용은 향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 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도로 등의 개발계획은 각각의 개발 주체가 계획·추진예정 및 실행 중인 상황을 표현한 것으로써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추후 개발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계약해지 및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방문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할 수 없습니다. - 계약 및 입주 시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은행, 인터넷, 부동산중개 등)는 우리 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입주 예정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함 - 계약 전 기타 자세한 단지여건, 혐오시설의 유무 및 사업부지 개발계획 등은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여 확인 후 계약체결을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인한 주변개발, 일조권,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등으로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입주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임(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함)
기타사항	• 주택소유, 소득, 부동산 및 자동차 보유기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증명서류(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신청자가 예비입주자로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주택 해약발생시 일반 세대에 우선하여 공급 안내할 예정이니, 해당세대의 경우 장애인 세대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아님) *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장애의 정도가 심한 지체장애인(뇌병변장애인),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인 경우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태아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 전까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피입양자를 가구원으로 인정받아 입주 예정자로 선정된 자(가산 소득 기준을 인정받은 자 포함)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 불법 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내 입주 시 입주일은 해당 주택의 열쇠교부일이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까지 입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종료일 다음날을 입주일로 봅니다. • 입주 시 잔금 납부, 이사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 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임차인은 입주와 동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전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시기금 취급은행(우리은행, KB국민은행, NH Bank, 신한은행, IBK기업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으며, 계약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등이 달라지므로 은행과 미리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및 계약장소 주변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대출, 인테리어 등)는 우리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사항이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입주개시일 이전에 입주예정자의 사전방문을 실시하며, 구체적인 일정은 계약자에게 개별 통보합니다. • 거주하는 동안 출생한 2세 미만(2세가 되는 날 포함)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경우, 거주 중 이던 주택보다 넓은 면적의 LH 임대주택으로의 이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장기전세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으로 이주 불가) • 임대료 납부는 자동이체 및 이빌링을 원칙으로 하며,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에서 자동이체 및 이빌링 서비스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9.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에 따라 주택성능등급 및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 공동주택성능등급

주택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등에 따라 인증된 공동주택의 항목별 성능등급을 표시함
※ 본 공고문에 기재된 성능등급은 예비 인증 결과에 따라 작성하였으며, 현장여건 및 본인증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성능등급은 공급시점에 득한 공동주택성능등급으로서 입주시점에는 주변 환경에 따라 일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① 소음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경량충격을 차단성능	★★★★
중량충격을 차단성능	★★
세대 간 경계벽의 차음성능	★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외 소음도	★★
화장실 급배수 소음	★

② 구조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내구성	★
가변성	★★★★
수리용이성 전용부분	★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③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기존 대지의 생태학적 가치	해당없음
과도한 지하개발 지양	해당없음
토공사 절성토량 최소화	해당없음
일조권 간섭방지 대책의 타당성	해당없음
에너지 성능	★★★★
에너지 모니터링 및 관리지원 장치	★
신·재생에너지 이용	해당없음
저탄소 에너지원 기술의 적용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사용 금지	해당없음
환경성선언 제품(EPD)의 사용	★★
저탄소 자재의 사용	★★
자원순환 자재의 사용	★
유해물질 저감 자재의 사용	★★
녹색건축자재의 적용 비율	★★
재활용가능자원의 보관시설 설치	★★★★★
빛물관리	해당없음
빛물 및 유출지하수 이용	해당없음
절수형 기기 사용	★★★★

③ 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물 사용량 모니터링	★★
연계된 녹지축 조성	해당없음
자연지반 녹지율	★
생태면적률	★★
비오름 조성	해당없음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제품의 적용	★★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④ 생활환경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단지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대중교통의 근접성	★★★★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생활편의시설의 접근성	★★★★
건설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매뉴얼 제공	★★★★
사용자 매뉴얼 제공	★★★★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 제공	★★★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공용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홈네트워크 종합시스템	★★★★
방범안전 콘텐츠	★★

⑤ 화재·소방 관련 등급

성능항목	성능등급
감지 및 경보설비	★★
제연설비	★★
내화 성능	★
수평피난거리	★★★★
복도 및 계단 유효너비	★★★★
피난설비	★

■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구 분	적용 여부	구 분	적용 여부
측벽	적용	바닥(층간바닥)	적용
외벽(직접면)	적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외벽(간접면)	적용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창호(직접면)	적용	LED조명	적용
창호(간접면)	적용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지붕	적용	절수설비	적용
바닥(직접면)	적용	고효율설비	적용
바닥(간접면)	적용		

10. 시행자 및 시공업체 현황

블록	사업주체	시공업체	연대보증인	감리회사
인천계양 A3블록	한국토지주택공사	제일건설(주) (124-86-09636) 남양건설(주) (412-81-02461) 서진산업(주) (609-81-43877)	-	(주)신화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주)에이치케이 건축사사무소 마인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주) (주)도원엔지니어링 건축사사무소

11. 편의시설 설치 안내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에만 설치)

해당 주거약자나 주거약자가 세대원으로 있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제공대상별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구 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귀틀에 경사로 설치	주거약자
거실	바닥면에서 1.2M 내외 높이에 세대단말기(월패드) 설치	
	조명밝기 600 ~ 900럭스(lux), 세대별 시각경보기	
	동체감지기 설치	
부엌	좌식 싱크대 설치	
	취사용 가스밸브 바닥면에서 1.2m 높이에 설치	
욕실	높낮이가 조절되는 세면기 설치	
	좌식 샤워시설	
	수건걸이 높이조정(바닥면에서 1.2미터 높이 내외로 설치)	
침실	침실조명 밝기 300 ~ 400럭스(lux)	
기타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음성유도 신호기 설치	

* 주거약자용 주택은 기본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중복 신청 필요 없음)

* 주거약자용 주택 편의시설은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주거약자용 주택 외 일반세대에만 설치)

장애인의 편의증진을 위해 최초 입주자 본인 또는 부양가족 중 1명 이상이 제공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자에 한하여 대상에 따라 아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드립니다.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는 신청 불가)

구분	설치항목	제공대상
현관	마루갑을 경사로	휠체어 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현관턱에 경사로 설치
욕실 (1개소에 한함)	단차 없애기	통행에 지장이 되는 바닥의 단차를 줄임
	출입문 규격확대 및 방향 조정	출입구 폭 80cm 이상(설치 불가능한 경우 제외) 개폐방향 변경(안여닫이→밖여닫이)
	좌식 샤워시설	욕조 미설치, 좌식 샤워시설 및 안전손잡이 설치 (L자형 1개, —자형 1개)
	좌변기 안전손잡이	좌변기 벽면에 안전손잡이(L자형) 설치
	수건걸이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이용가능한 높이(1.0~1.2m)
	높낮이조절 세면기	높낮이 조절 가능한 세면기 설치
	좌변기 옆 여유공간	휠체어 이용자 등 위하여 좌변기 옆 75cm 이상 여유공간 확보
주방	좌식 싱크대	고령자(65세 이상), 3급 이상 지체장애인과, 뇌병변장애인과, 청각장애인, 시각장애인, 상이등급 3급 이상
	가스밸브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거실	세대단말기(월패드) 높이조정	휠체어에 앉아서 사용이 가능한 높이(1.2m 내외)
	비디오폰 점자표지	비디오폰(월패드) 단축버튼 점자표지
	야간센서등	욕실출입구 천정에 설치
	시각경보기	세대내 1개소 설치
	조명밝기 조정	거실 조명 밝기(600~900lux)
침실	조명밝기 조정	침실 조명 밝기(300~400lux)
기타	음성유도 신호기	상가, 관리소, 시각장애인이 거주하는 주거동 출입구에 설치

* 상이 3급 이상 장애인은 상이 3급 이상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신체장애 3급 이상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경도장애 이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을 말합니다.

■ 편의시설 설치 관련 유의사항

(※ 공사진행 정도 및 현장여건에 따라 일부 편의시설은 설치가 불가할 수 있습니다.)

- ▶ 신청기간 : 계약 체결기간 내 [26. 4. 21(화) ~ 4. 23(목)]
- ▶ 편의증진시설 설치 해당세대가 설치를 희망하는 경우 사전에 문의 바람(문의 : 032-890-5245)
- ▶ 대상자별로 제공될 수 있는 편의시설내역과 세부설명자료, 신청서 등은 추후 계약 장소에 비치 예정
- ▶ 신청시 필요서류 : 장애인증명서(장애인복지카드 사본), 국가유공자 확인원, 지원대상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고엽제범 적용 대상 확인원,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및 가족) 확인서

이 주택은 무주택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정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 지원으로 건설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임대문의

- 콜센터 : 전국 대표전화 1600-1004
- 인터넷
 - 마이홈포털 (<http://www.myhome.go.kr>)
 -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http://blog.naver.com/happyhouse2u>)
 - LH 홈페이지 (<http://www.lh.or.kr>)

당첨자 ARS
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인터넷 청약

- PC :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청약 → 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 모바일 : “LH청약플러스” 앱(App) 설치 → 청약 → 임대주택>청약신청>건설임대

LH 인천지역본부 약도

- 지하철 : 수인선 호구포역 2번 출구 (도보 5분)
- 버 스 : 20번, 20A번, 38번, 3-2번, 103-1번 (논현3단지하늘마을 또는 인천남동우체국 하차)
도로명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23(논현동)

△ LH 임·직원의 부당한 업무처리, 편의제공 요구, 인격모독 등 갑질 피해를 겪으셨다면 저희 공사 홈페이지(www.lh.or.kr) 고객센터 내 「부조리 및 갑질신고」에 제보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11.06.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